고 시

◉ **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973호**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(대구연호 A-2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1163호(2021.01.04)로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A-2BL 공공주택(국민임대,영구임대,행복주택 1,260호) 사업계획에 대하여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 업 명 : 대구연호 A-2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국민임대,영구임대,행복주택 1,260호)
2. 사업시행자
   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   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시행지역 :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A-2BL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 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  나. 사 유 :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(사업유형 변경 : 국민임대,영구임대,행복주택 → 통합공공임대)